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용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15
----------	-------

발의연월일 : 2026. 6. 8.

발 의 자 : 유용원 · 김소희 · 김예지  
조승환 · 성일종 · 이현승  
강선영 · 김은혜 · 윤한홍  
박준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는 행위와 국민 보호를 위해 특정 국가나 지역의 방문·체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서류를 위조해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여행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여 억류·나포되었다가 국가의 영사조력을 통해 구출된 후에도 재차 방문을 강행하는 등 법 위반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미비한 실정임.

이에 부정한 방법으로 여권을 발급받거나 방문이 금지된 국가·지역을 무단으로 방문하는 등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사람에 대하여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습적인 위법 행위를 억제하고 국가 행정력 및 외교력의 낭

비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383호 여권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법률 제21383호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 제24조(벌칙)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u>&lt;신 설&gt;</u></p>	<p>법률 제21383호 여권법 일부개정 법률 제24조(벌칙)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② <u>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u></p>